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법정공고방식다양화를위한
39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제2조(「계엄법 시행령」의 개정)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관보”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조(「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중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를 “일간신문,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를 “일간신문, 관보,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로 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를 “일간신문,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조(「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일간신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를 “관보에 고시하고, 일간신문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 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주요 내용을”을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를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공고하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그 내용을”을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를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공고하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전단 중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보에 고시하고,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공고하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구강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주 이상 공보와”를 “3주 이상 공보에 고시하고,”로,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를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8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관할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자통신매체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 일반이 쉽게 인지하고 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간신문, 시·군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를 “해당 시·군등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등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를 “해당 시·군등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등을 주

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를 “해당 시·군등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등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로 한다.

제10조(「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할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도의 공보 및”을 “관할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 게시판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도의 공보 및”을 “시·도의 공보, 게시판,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1조(「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관보, 게시판,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으로, “홈페이지에”를 “홈페이지에도”로 한다.

제12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를 “관보,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방송, 전자통신매체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고,”로,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를 “관보, 일간신문, 방송, 전자통신매체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로 한다.

제13조(「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 중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를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고,”로, “요청하여야”를 “요

청해야”로 한다.

제1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며,”로 한다.

제1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를 “관보에 고시하고,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를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로 한다.

제16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제17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게시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제18조(「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 본문 중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야”를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다시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다시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점용물 등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제19조(「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를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를 “시·군의 공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로, “개최하여야”를 “개최해야”로 한다.

제20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를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로 한다.

제21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누리집 게시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제22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를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로 한다.

제23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둘 이상과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보나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중 하나 이상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국이나 해당 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를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전국 또는 해당 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해당 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11제2항 중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지를”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을”로 한다.

제26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를 “관보에 고시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도 게재해야”로 한다.

제16조 중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를 “관보에 고시하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도 게재해야”로 한다.

제27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같다)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를 “같다),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도 게재해야”로 한다.

제28조(「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반일간신문과”를 “일간신문이나”로,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

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29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 중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를 “사이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1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하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2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국”을 “관보, 공보, 게시판, 전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로, “1회 이상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33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을 “공보,”로, “일간신문에 각각”을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을 “공보,”로, “일간신문에 각각”을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을 “공보,”로, “일간신문에 각각”을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로 한다.

제34조(「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를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5조(「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를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관보,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3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를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를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7조(「통계법 시행령」의 개정)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3항 본문 중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를 “신문, 방송, 정보통신매체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을 “공고를 생략”으로 한다.

제38조(「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를 “공보, 일간신문, 방송 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9조(「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을 “한다), 관보, 공보,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 시)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 는 분쟁조정위원회의 <u>인터넷 홈 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 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u>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 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인터넷 홈 페이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 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인 터넷신문, 방송이나 그 밖의 효 과적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 법-----.</u>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상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청 구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관보</u>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계엄지역이 1개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국한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u>공고하여야</u> 한다.	제5조(보상공고) ----- ----- ----- ----- 인터넷 홈페이지, 관 보 ----- ----- ----- ----- ----- ----- <u>공고해야</u>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u>시행계 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u> 공고하고, 30일 이 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u>하 여야 한다.</u>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 ----- ----- ----- <u>일간신 문,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u> ----- ----- ----- <u>해 야 한다.</u>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 제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하려는 경우에는 <u>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국가유산청, 특별자 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u>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② ----- ----- ----- ----- <u>일간신문, 관 보,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u> 공고하 고, ----- -----

<u>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u> <u>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u> ③ (생 략)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 용을 <u>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u> <u>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u> <u>·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u> <u>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u> <u>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u> <u>야 한다.</u>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일간신문, 공보, 게시판</u> <u>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u> <u>지에 공고하고, -----</u> ----- ----- <u>해야</u> -----.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 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u>일간신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u>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 계획공고) ① ----- ----- ----- ----- ----- <u>관보에</u> <u>고시하</u> <u>고, 일간신문 또는 한국토지주</u> <u>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u> <u>이를 공고해야</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u>일간신문</u> 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 ----- ----- ----- <u>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u>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u>주요 내용을</u>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u>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u>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 ----- ----- ----- ----- ----- ----- ----- ----- ----- <u>주요 내용을</u> <u>공보에</u> <u>고시하고</u> , ----- ----- ----- ----- ----- ----- <u>일간신문이나 해</u> <u>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u> <u>지를 통해서도 이를 공고하며</u> , -----

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 (생략)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공고하며, -----
----- 해야
---.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 교
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u>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u> ② (생략)	<u>안을 공보에 고시하고,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공고하며,</u> ----- <u>해야</u>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u>3주 이상 공보와</u>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u>일간신문에</u>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u>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u>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 ----- ----- ----- ----- ----- ----- <u>3주 이상 공보에</u> <u>고시하고,</u> ----- ----- <u>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를 공</u> <u>고해야 한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u>	제6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관할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자통신매체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 일반이 쉽게 인지하고 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u>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u>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 · 군수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일간신문, 시·군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u>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 ----- ----- <u>해당 시·군등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등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시장·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u>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 ----- ----- ----- ----- <u>해당 시·군등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등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u> ----- ----- ----- -----

한다. 1. ~ 4. (생략) 제26조(시장·군수등 외 산업혁신 구역계획의 승인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주민, 공장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 당 시·군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u>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제26조(시장·군수등 외 산업혁신 구역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 ----- <u>해당 시·군등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 ·군등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 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32 –

② ~ ④ (생 략) ⑤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u>공고하</u> <u>여야</u>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시·도의 공보, 게시판,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u> ---- ----- ----- <u>공고해</u> <u>야</u> ----. 1. ~ 3. (현행과 같음)
--	--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조성계획안의 공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관보</u> 와 <u>둘 이상의 일간신문</u>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u>홈페이지</u> 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9조(조성계획안의 공모) ----- ----- ----- <u>관보</u> , <u>게시판, 일간신문</u>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u>중 하나 이상</u> ----- ----- <u>홈페이지</u> 에도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관보와 둘 이상</u> 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u>광고하고</u>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u>게시하여야</u>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 ----- ----- ----- ----- ----- <u>관보, 일간신문</u>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방송, 전자통신매체 또는 그 밖의 <u>효과적인 방법으로 광고하고, -</u> -- <u>게시해야</u>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① ~ ⑤ (생략)	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⑥ ----- ----- ----- -----

수 있도록 해당 제안 내용을 <u>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u>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⑦ ~ ⑪ (생략)	----- <u>관보, 일간신문, 방송, 전자통신매체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u> -----. -----. -----. 1. 2.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공표방법 등) ① ~ ③ (생략)	제17조의4(공표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u>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u> ,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u>요청하여야</u> 한다.	④ ----- ----- ----- ----- ----- 일 <u>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고</u> , - ----- <u>요청해야</u>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 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u>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하고</u>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 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해 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매 체를 이용해서 이를 공고하며,</u> ---. ----- ----- ----- -----. ④ ~ ⑨ (현행과 같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u>전국 또는 해당 지역</u> <u>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u> <u>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u> <u>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응모기간 은 90일 이상으로 <u>하여야 한다.</u>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관보에 고시하고, 전</u> <u>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u> <u>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인</u> <u>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u> <u>이를 공고해야 한다.</u> ----- ----- <u>해야</u> ---.
1. ~ 6. (생 략) ④·⑤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 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u>일간신문에 1회</u> <u>이상 공고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u>하여</u>	제42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 ----- ----- ----- ----- <u>일간신문이나 인</u> <u>터넷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u> <u>법으로 공고해야 한다.</u> -- <u>해야</u>

<u>약</u> 한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제42조의4(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u>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u> ② ~ ⑦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의4(개발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 ----- ----- ----- ----- ----- ----- ----- <u>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u>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략)	제18조의2(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u>일간신문</u> 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 ----- <u>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u> <u>등</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생략) ②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공고는 <u>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u> 으로 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58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u> ----- ----- -----. 1. <u>한국소비자원 누리집 게시</u> 2. <u>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u> 3. <u>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u>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② (생략)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보관하는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u>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해야 한다.</u>	제14조의3(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다시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다시 공고해야 -----</u> -----. <u>다만, 점용물 등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u>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u> 공고하고 14일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u>하여야</u> 한다. ④ ~ ⑥ (생략)	제11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공보,</u> <u>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u> <u>공고하고,</u> ----- ----- <u>해야</u> ----.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② (생략)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려면 미리 위탁계획서의 개요와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u>하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u> 공고하여야	제37조(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시·군의 공보,</u> <u>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u> 공고해야 하고, ----

<u>하고</u>,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 명회를 <u>개최하여야</u> 한다. ④ ~ ⑥ (생략)	----- ----- <u>개최해야</u>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u>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 1. ~ 5. (생략) ② (생략)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 ----- ----- ----- ----- <u>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u>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u> 에 공고해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 ----- ----- ----- <u>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u>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u> ----- ----- -----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누리집 게시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② (현행과 같음)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u>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25조(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 ----- ----- ----- <u>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u> ----- <u>으로</u>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공청 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 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 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어촌특 화발전계획 구역 예정구역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속하 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 반일간신문 둘 이상과 해양수산 부 또는 해당 광역시·도·특별 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 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u>	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공청 회) ① ----- ----- ----- ----- ----- <u>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보나 해당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예 정구역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 반일간신문,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광역 시·도·특별자치도를 방송구 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중 하나 이 상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① (생략)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 은 지체 없이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u>전국이나 해당 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시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u>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u>하여야</u> 한다.	② ----- ----- ----- ----- <u>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전국 또 는 해당 도·시를 주된 보급지 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 문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해당 도·시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여</u> ----- <u>해야</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① (생략)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탁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과 예탁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u>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u> 공시해야 한다.	② ----- ----- ----- ----- ----- ----- <u>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을</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u>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u> 한다.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 ----- ----- <u>관보에 고시하</u> <u>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u> <u>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u> <u>등 정보통신망에도 게재해야</u> - ----- --.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u>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u> 한다.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 ----- ----- ----- <u>관보에 고시하</u> <u>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u> <u>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u> <u>등 정보통신망에도 게재해야</u>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사업 시행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 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 달할 서류의 내용을 전국을 주 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개선사업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이 조 에서 <u>같다</u>)에 1회 이상 공고하 <u>여야</u> 한다.	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 ----- ----- ----- ----- ----- ----- ---- <u>같다</u>), 공보, 게시판 중 하 나 이상에 <u>공고하고</u> , 인터넷 홈 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도 게재 <u>해야</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 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u>일반일간신문과</u>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u>게시하여야</u> 한다.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 ----- ----- ----- ----- -- <u>일간신문이나</u> ----- ----- <u>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u> -- . ----- ----- <u>게시해야</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 ----- ----- ----- ----- ----- -----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
1. ~ 4. (생략) ②·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 ----- ----- ----- ----- 사 이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 되,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 으로 공고할 수 있고, ----- ----- 해 야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 · 광역시 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특별대 책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특별대 책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u>해당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u> 공고하고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u>하여야</u>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 는 시장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 다.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 ----- -----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을 주 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u>에도 이를 공고하며,</u> ----- <u>해야</u>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청회) ① (생 략)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 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u>전국</u> 또는 해당 지역 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 반일간신문과 <u>인터넷 홈페이지</u> 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 까지 <u>1회 이상</u> 공고하여야 한 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6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관보, 공보, 게시판, 전국</u> ----- ----- <u>인터넷 홈페이지</u> <u>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u> ---- ---- <u>공고해야</u>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 ④ (생략)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u>공보</u> ,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u>일간신문</u> 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⑤ ----- ----- ----- ----- 공보, ----- ----- -----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시·도지사는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도의 <u>공보</u> ,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u>일간신문</u> 에 각각 공고해야	⑦ ----- ----- -----. ----- ----- ----- 공보, ----- -----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효과적

한다. 1. ~ 4. (생략)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시·도의 <u>공보</u>,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u>일간신문</u>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u>인 방법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u>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공보</u>, ----- ----- <u>일간신문</u> <u>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u>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u>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u>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u>하여야</u> 한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u> ----- ----- ----- ----- <u>해야</u> ---.
1.·2. (생략) ④ ~ ⑨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u>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u>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 ----- ----- ----- ----- <u>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관보, 공보, 게시판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생략)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u>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u>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u>하여야</u> 한다.	② ----- ----- ----- ----- ----- ----- ----- ----- <u>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u> ----- <u>해야</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지정하	④ ----- ----- ----- ----- -----

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u>둘 이상</u>의 <u>일간신문</u>, 그 <u>지방자치단체</u>의 <u>게시판</u> 및 <u>인터넷 홈페이지</u>에 <u>광고하고</u>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u>하여야</u> 한다. ⑤ ~ ⑨ (생략)	----- ----- ----- ----- ----- <u>일간신문</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게시판</u>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u>광고하고</u>, <u>인터넷 홈페이지에도</u> <u>이를 광고하며</u>, ----- ----- <u>해야</u> -----. ⑤ ~ ⑨ (현행과 같음)
---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방법) ①·② (생략)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u>일간신문에</u> 공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u>15일 이상 게재하여야</u>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u>일간신문에</u>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신문, 방송, 정보통신매체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u> <u>로 공고해야</u> ----- . -- ----- ----- ----- <u>공고를 생략</u> ----- -----. ④ (현행과 같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u>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u>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u>하여야</u> 한다.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 ----- ----- ----- ----- ----- ----- <u>공보, 일간신문, 방송 또는</u> --- ----- ----- ----- <u>해야</u>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반일간신문”이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해관계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한다), 관보, 공보,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072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6522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3228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39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80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846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4425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51) 773 - 5164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148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연 락 처	(02) 2100 - 3145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4263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연 락 처	(02) 2100 - 2993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426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연 락 처	(042) 481 - 3110